

그때 그 사건을 아시나요?

본고는 1960년대 이후 양계업이 태동하면서 현재에 이르기 까지 양계업계의 발전과 함께 벌어졌던 각종 사건들을 월간양계에 게재된 내용을 중심으로 모아 본 내용이다. 이 번호에는 양계산물 홍보 및 안전성에 관련된 내용을 게재한다.

- 편집자주 -

월간양계 첫 호 발행

1969년 11월 1일 (사)한국가금협회(양계협회 전신)가 당시 오봉국 회장(현재 양계협회 고문)의 노력하에 첫 호가 발간되었다. 당시 오준석 농림부 축산국장이 창간사를 집필하였는데 본문은 48페이지 광고는 단색 20, 칼라 6페이지로 발간되었으며, 월간양계 제호는 70년 1월부터 지금까지 서울대 윤석봉 박사가 쓴 필체로 사용되고 있다.(1969년 11월호)

닭경제능력검정 시작 및 안성 검정소 준공

제 1회 산란계경제능력검정이 1965년 예비검정을 거쳐 1966년 4월 1일부터 1969년 8월 4일까지 3회에 걸쳐 출품자 51개소 검정계 총 2,550수에 대해 첫 실시되었다. 또한 제1회 육용계 경제능력검정은 1969년 9월 9일에 실시되었다. 현재 본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닭경제능력검정소는 1984년 11월 15일 안성군 서운면에 부지 11,410평 위에 건평 1,142.5평 규모로 총 사업비 4억9천 8백78만원을 들여 세워졌다.(1969년 11월호, 1984년 12월호)

김재춘 회장 국회의원 당선

1970년부터 한국가금협회 회장직을 역임해 오던 김재춘 회장이 5월 25일 실시된 제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김포강화지구에 출마해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이후 김재춘 회장은 1973년 (사)대한양계협회가 정식 출범한 이후 만장일치로 추대되면서 1979년까지 양계협회 초대, 2대 회장을 이끌었다.(1971년 7월호)

(사)대한양계협회 창립

한국가금협회와 한국부화협회, 한국초생추감별협회가 양계산업 발전과 단체의 병립으로 인한 사업의 중복과 불필요한 경비 및 시간의 낭비를 줄이기 위한 사업의 중복과 불필요한 경비 및 시간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 각 단체별로 해산식을 갖고 4월 26

일 오후 5시 여성회관에서 (사)대한양계협회 창립총회를 갖고 6월 14일 설립허가를 받아 정식 출범하였다. 이날 총회에서는 농림부 차관보 축산국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회장에는 김재춘(전 한국가금협회장, 국회의원)씨가 추대되었으며 부회장은 오세정(건국대 축대) 교수와 이필용(소신중계장), 윤경중(서울부화장) 씨가 선출되었다.(1973년 5월호)

### 시세엽서 및 주간 양계속보 발행

양계속보의 전신인 시세엽서가 1979년 2월부터 발행되었다. 시세엽서는 동년 1월 11일 채란분과 위원회에서 생산자들을 보호,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전달을 위해 발행기로 하였으며, 연간 구독료 3,000원을 받기로 하였다. 그 후 8년 후인 1987년 4월 3일부터 양계속보를 창간하였는데, 그동안 시세엽서를 통해 전달되던 계란, 육계가격, 초생추 시세, 노계시세, 사료생산실적, 전망 등이 모두 수록되고 양계관련 소식란을 편집해 2쪽 칼라로 인쇄되었다. 당시 구독하는 회원들에게는 연간 1만원의 협찬금을 받았으며 비회원에게는 1만 5천원의 협찬금을 받았다.(1979년 1월호, 1987년 4월호)

### 본회 마크, 기 제작 및 사무실 이전

1988년 9월부터 본회를 상징하게 될 마크와 기를 제작하여 사용하였으며, 서울역 사무실에서 현재 서초동 축산회관으로 12월 20일 사무실을 이전 하였다. 축산회관에는 양계협회를 비롯한 중축개량협회, 낙농육우협회 등이 함께 입주하였다.(1988년 10, 12월호)

### 제1회 한국양계박람회 개최

본회가 주최한 '91한국양계박람회가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에 걸쳐 서울올림픽공원 내 제2체육관(펜싱), 제3체육관(역도)에서 관람객 3만2백명이 다녀간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후 1997년 4회까지 개최하면서 양계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했으며, 1999년 5회부터는 국제축산박람회로 명칭을 바꿔 양계, 양돈, 낙농육우 등이 함께 참여하는 종합박람회로 승화되어 지금까지 2년제로 열리고 있다.(1991년 10월호)

### 자조금사업 본격시행

농림수산부는 1992년 6월 1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13조와 동법 시행령 26조, 27조의 규정에 따라 축산자조금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양계 및 양돈협회를 자조금사업 단체로 선정, 각각 3억원 이상의 자조금을 적립하면 최고 1억5천만원을 보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1992년 7월호) **양계**